

#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지권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408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4월 3일

발 의 자 : 정지권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이은주, 이승미, 정진술, 강동길,  
김인호, 추승우, 김태호, 이현찬,  
김상훈 의원 (9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행 가로변 정류소에 정차하는 시내버스는 대부분 1대이상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는 경우가 많음. 현행 조례상의 버스 '정차범위' 10미터는 버스 크기(전장 약12미터) 등을 고려할 때 너무 협소하게 선정되어 버스 승차를 위해 대기하는 시민들이나 운전원들에게 동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정차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승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으며
- 가로변 정류소와 맞물려 설치된 화단들로 인하여 정류소에 정차하지 못한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들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 현행 가로변 버스정류소로부터 20미터 가량은 화단을 없애고 보도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여건 개선하고자 함
- 현재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버스정류소에서 대기하는 시민들의 편

의를 위해 흑한과 흑서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를 서울시에서 규격화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제한함

## 2. 주요골자

- 가. 시내버스 정차범위를 '10미터'에서 '20미터'로 확대(안 제2조제4호가목)
- 나. 정류소 설치 기준에 흑서 및 흑한을 피할수 있는 시설을 포함  
(안 제5조제1항제6호)
- 다. 정차범위내 시설물 설치 제한 사항에 가로변 화단을 추가(안 제6조제1항제6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별첨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가목 중 “10미터”를 “20미터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시내버스정류소는 흡서 및 흡한에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,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가로변 화단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"정차범위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보도에 시내버스정류소임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승차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<b>10미터</b> 이내인 곳. 단, 표지판과 승차대가 같이 설치된 경우 표지판을 기준으로 <b>10미터</b> 이내인 곳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생 략)</p> <p>제5조(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)</p> <p>① 정류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~5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----- ----- -----<b>20</b> <u>미터</u>----- ----- -----<b>20</b> <u>미터</u>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)</p> <p>① 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1~5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b>6. 시내버스정류소는 흑서 및 흑한에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.</b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)</p> <p>① 정차범위 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 <p>1~5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6.</u>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6조(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</p> <p>1~5. (생략)</p> <p><u>6. 가로변 화단</u></p> <p><u>7.</u> (현행 제6호와 같음)</p> <p>② (생략)</p>

#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정차범위를 확대(안 제2조제4항제1호)함에 따라 정차표시를 위한 비용이 발생 가능할 것이나, 버스정류소별 환경에 따라 정차표시 방법이 달라지는바 현황파악이 어려워 비용 추계가 곤란
- ※ 안 제5조(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)제1항제6호는 기추진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니며, 구비로 시설물을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음(사업설명서 붙임)
- ※ 안 제6조(정차범위 내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)제1항제6호의 ‘가로변 화단’은 현 동조례 제6조제1항제6호 ‘그 밖에 시장이 정차범위 내에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물’에 포함되어 정비하고 있으며, 금번 조례 개정은 가로 변 화단을 지장물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(사업설명서 붙임)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- 정차범위를 확대(안 제2조제4항제1호)함에 따라 정차표시를 위한 비용이 발생 가능할 것이나, 이미 정차범위가 20m인 버스정류소들도 있고 버스정류소별 환경에 따라 정차표시 방법(승차대 확대, 정지표지판 설치, 정차표시선 등)이 달라지는바 현황파악이 어려워 비용추계가 어려움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분 석 관 이수아

☎ 02-2180-7944

e-mail : sua8873@seoul.go.kr